

기타수당 규정

제정 2021.02.25. 규정 제15호

개정 2021.10.21. 규정 제1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.)의 각종 회의 참석(이사회 포함) 및 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의수당 지급범위)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회의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사회 참석수당
2.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
3. 서면 자문수당
4. 그 외 재단운영에 필요로 인해 개최하는 기타회의 및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

제3조(심사수당 지급범위)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심사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전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 등에 대한 일반 수당
2. 직원채용과 관련된 직원채용심사 수당
3. 심사·평가의 난이도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현장심사 수당
4. 단, 변호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,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한다. <개정 2021.10.21.>

제4조(지급방법) ① 회의·심사수당은 매 회의 개최시 마다 일당액으로 지급한다.

② 강사료 지급은 매 강좌마다 시간당액으로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액) ① 회의·심사수당 지급기준액은 [별표 1]과 같다.

②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액은 행정안전부 「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」에 준한다.

③ 서면평가·서면회의 및 서면자문 수당 지급은 평가 및 심의, 의결을 요하는 등 중요 사항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. 다만, [별표 1]의 지급기준액에서 교통비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, 교통비 지급액 기준은 행정안전부 「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」에 준한다.
- ⑥ 강연 또는 강의내용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유일하게 활용되거나 재단 사업에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2021. 10. 2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회의수당 지급기준

1. 참석수당 지급 기준

| 구 분 | 등급 | 지 급 액 | 지급기준 | 비 고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참 석 수 당 | 이사회 참석수당 | - | ○ 기본료 - 150,000원 | ○ 당해 회의 참석자 (※ 당연직임원 미지급) | · 원격통신을 이용한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기존 수당 지급 기준 준용 |
| | 정책자문 위원회 /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| - | ○ 기본료 - 150,000원 | ○ 당해 회의 참석자 (※ 당연직임원 미지급) | · 재단직원 및 남양주시 공무원 지급 제외 · 공무원의 경우 자치 단체에서 여비지급과 이중지급 금지 |
| | 기타회의 참석수당 | - | ○ 기본료(2시간) - 150,000원 | ○ 당해 회의 참석자 (※ 당연직임원 미지급) | · 원격통신을 이용한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에도 기존 수당 지급기준 준용 |
| | 서면 자문수당 | - | ○ 자문비용 - 50,000원 | ○ 자문참석 대상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문하는 경우 | · 남양주시공무원 지급 제외 |

2. 심사수당 지급 기준

| 구 분 | | 등급 | 지 급 액 | 지급기준 | 비 고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---|--|---|
| 심사 수당 | 일반 수당 | - | ○ 기본료(2시간) - 100,000원 ○ 초과(1시간 당) - 50,000원 | ○ 단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| · 임직원인 경우 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. ※ 남양주시 공무원 지급 제외 | |
| | | | ○ 사전검토비 - 50,000원 | ○ 사전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어 사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경우 | | |
| | 직원채용 수당 | - | ○ 기본료(3시간) - 150,000원 ○ 전일(8시간) - 300,000원 ○ 초과(1시간 당) - 100,000원 | ○ 직원채용과 관련된 서류 전형, 면접전형 시 일당으로 지급 | | |
| | | | 서면 자문수당 | A | | ○ 기본료(3시간) - 150,000원 ○ 초과(1시간 당) - 50,000원 |
| | B | ○ 기본료(3시간) - 100,000원 ○ 초과(1시간 당) - 50,000원 | | | | ○ 심사·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○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정도 요구되는 경우 |
| | | C | | | | ○ 기본료(3시간) - 70,000원 ○ 초과(1시간 당) - 50,000원 |

※ 예외적 규정

변호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, 건축사,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